I·SEOUL·U 너와 나의 서울

# 서울특별시

서울시 홈페이지 seoul.go.kr

수신 수신자참조
(경유)
제목 교통안전진단기관 변경사항 신고기한 안내

1. 귀 사(협회)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
2. 교통안전법 제39조에 따라 우리 시에 등록된 교통안전진단기관은 같은 법 제40조,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및 교통안전진단지침에 따라 등록사항이 변경될 경우 그 내용을 우리 시에 신고하여야 합니다.

3. 교통안전진단기관은 등록사항(상호, 대표자, 사무소 소재지 또는 전문인력)변경과 휴·폐업 시에는 30일 이내 신고서와 구비서류를 「서울시청 열린민원실」에 제출하여야 하며,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4. 아울러 교통기술사협회는 소속 회원에게 관련 내용을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끝.

서 울 특 별 시 장

수신자 (주)한국종합기술,(주)유신,(주)도화엔지니어링,(주)동일기술공사,(주)태조엔지니어링,(사)한국도로협회,(주)대한콘설탄트,(주)동해종합기술공사,(주)케이티에스엔지니어링,교통기술사협회

주무관 이경주 교통안전팀장 김세교 교통운영과장 02/05 代최진경

협조자

시행 교통운영과-2049 ( 2018.2.5. ) 접수 ( )

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(서소문동) /
전화 02)2133-2470 /전송 02)2133-1053 / kyungju@seoul.go.kr / 대시민공개